수원여자대학교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8.02.21
개정 2020.04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사회공헌사업 및 사회봉사단(이하 “봉사단” 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사회공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4.16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임기는 보직 임용기간으로 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② <삭제 2020.04.16>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<개정 2020.04.16>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0.04.16>
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 <신설 2020.04.16>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0.04.16>
1. 본 대학의 사회공헌사업 및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04.16>
2. <삭제 2020.04.16>
3. 기타 지역사회와의 사회공헌 관련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 <개정 2020.04.16>

제6조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. <개정 2020.04.16>
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 <개정 2020.04.16>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